

II. 「국채사무취급절차」 신규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3조(정의)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“금리스왑거래”란 거래 당사자 간에 약정한 원화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와 고정금리에 따른 이자를 교환하는 <u>거래</u>를 말한다.</p> <p>7. < 신 설 ></p>	<p>제3조(정의)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“금리스왑거래”란 거래 당사자 간에 약정한 원화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와 고정금리에 따른 이자를 교환하는 <u>국채 거래</u>를 말한다.</p> <p>7. “<u>한은금융망</u>”이란 한국은행 「<u>지급결제제도 운영·관리규정</u>」 제4조에 따른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말한다.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 <p>- 근거 법률 명확화</p>
<p>제6조(매출발행) 국채를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채매출신청서<별지 제6호 서식> 또는 「<u>지급결제제도 운영·관리규정</u>」 제4조에 따른 <u>한국은행금융결제망(이하 “한은금융망”이라 한다)</u>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통할점에 신청한다.</p>	<p>제6조(매출발행) 국채를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채매출신청서<별지 제6호 서식> 또는 <u>한은금융망</u>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통할점에 신청한다.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12조(국채증권의 교부) ① (생 략)</p> <p>② 통할점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에 따라 보상채권지급결정 통지서를 소지한 자에게 보상채권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 원부와 서로 <u>대조하고</u> <u>정당 수령권자 여부를 확인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채증권을 교부하는 경우 증권의 수령자는 국채수령증<별지 제14호 서식>을 제출</u>하여야 한다. <u>제20조와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국채증권의 교부 시에도 이와 같다.</u></p>	<p>제12조(국채증권의 교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통할점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에 따라 보상채권지급결정 통지서를 소지한 자에게 보상채권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 원부와 서로 <u>대조하여 그가</u> <u>정당한 수령권자인지 확인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제1항, 제2항, 제20조 및 제29조제3항·제4항에 따라 국채증권을 교부하는 경우 증권의 수령자는 국채수령증<별지 제14호 서식>을 제출</u>하여야 한다. < 단서 삭제 >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 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4조(전자입찰) ① (생략)</p> <p>② 전자입찰 참가자는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입찰 내역을 입력한 후 한국은행에 송신하여야 한다. <u>전산장애</u> 또는 한은금융망 미가입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서를 본부에 모사전송으로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전자입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전자입찰 참가자는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입찰 내역을 입력한 후 한국은행에 송신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전산장애</u> 또는 한은금융망 미가입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서를 본부에 모사전송으로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.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16조(전자응찰의 취소) ① (생략)</p> <p>② 전자입찰 참가자가 <u>응찰 종료시각 이후에</u> 응찰금액 또는 응찰금리 등의 입력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서면으로 <u>응찰 내역의</u>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전자응찰의 취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전자입찰 참가자가 <u>입력한</u> 응찰금액 또는 응찰금리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<u>응찰 종료시각 이후에</u> 발견하여 서면으로 <u>응찰의</u>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.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17조(입찰의 무효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정해진 보증금에 미달한 <u>경우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입찰사항 및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<u>경우</u></p>	<p>제17조(입찰의 무효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정해진 보증금에 미달한 <u>입찰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그 밖에 입찰사항 및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<u>입찰</u>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18조(입찰결과의 통보) 국고증권실장은 입찰이 종료되면 응찰 및 낙찰 내역을 즉시 기획재정부에 송부하고, 기획재정부로부터 낙찰결과에 대한 확정통지를 받으면 이를 <u>낙찰자</u> 앞 통보한다.</p>	<p>제18조(입찰결과의 통보) 국고증권실장은 입찰이 종료되면 응찰 및 낙찰 내역을 즉시 기획재정부에 송부하고, 기획재정부로부터 낙찰결과에 대한 확정통지를 받으면 이를 <u>낙찰자에게</u> 통보한다.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19조(등록청구) ① 「국채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4조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09조제5항에 따라 등록청구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명자로 국채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채등록청구서<별지 제15호 서식> 또는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청구한다. 다만, 보상채권에 대하여는 등록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9조(등록청구) ① 「국채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4조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09조제5항이나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에 따라 등록청구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명자로 국채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채등록청구서<별지 제15호 서식> 또는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청구한다. 다만, 보상채권에 대하여는 등록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- 근거법률에 전자증권법 추가 (현물증권 등은 「자본시장법」에 따라 등록)</p>
<p>제22조(등록변경) ① (생 략)</p> <p>1. 자연인 개명의 경우 <u>동</u>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신고서</p> <p>2.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<u>동</u>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초본과 인감신고서</p> <p>3. 자연인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주민등록증(대조 후 <u>반환</u>), 법인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법인등기부초본. 다만, 행정구역의 <u>분합</u>이나 그 밖의 명칭변경에 따른 주소변경은 <u>예외로 한다</u>.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제22조(등록변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자연인 개명의 경우 <u>해당</u>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신고서</p> <p>2.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<u>해당</u>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초본과 인감신고서</p> <p>3. 자연인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주민등록증(대조 후 <u>반환한다</u>), 법인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법인등기부초본. 다만, 행정구역의 <u>분리·병합</u>이나 그 밖의 명칭변경에 따른 주소변경은 <u>제외한다</u>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24조(국채등록부) ① (생 략)</p> <p>② 국채등록부 부분의 <u>관리</u>는 한국은행의 전산정보업무 취급규정상의 전산파일 보존절차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24조(국채등록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국채등록부 부분의 <u>관리</u>에는 한국은행의 전산정보업무 취급규정상의 전산파일 보존절차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25조(국채등록부의 열람청구 등) ①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등록국채의 기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채등록부 열람 및 <u>등·초본 교부</u>는 국채등록부열람청구서<별지 제24호 서식> 및 국채등록관련서류발급청구서<별지 제25호 서식>로 한다. 다만, <u>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등·초본의 교부청구 시</u>에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명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국채등록부 <u>등·초본 교부</u>는 국채등록부잔액증명서<별지 제26호 서식>로 같음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 략)</p>	<p>제25조(국채등록부의 열람청구 등) ①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등록국채의 기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채등록부 열람 및 <u>등본·초본 교부청구</u>는 국채등록부열람청구서<별지 제24호 서식> 및 국채등록관련서류발급청구서<별지 제25호 서식>로 한다. 다만, <u>이해관계인이 열람 또는 등본·초본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</u>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는 서류 또는 기명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국채등록부 <u>등본·초본 교부</u>는 국채등록부잔액증명서<별지 제26호 서식>로 같음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26조(국채의 원리금 지급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<u>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의 원리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</u> 제권판결문 정보(정보를 제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등본으로 한다)과 함께 국채원리금지급청구서<별지 제27호 서식>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등록기명국채의 경우 멸실 또는 분실 신고일 부터 2월이 경과된 때에는</u> 제권판결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 략)</p>	<p>제26조(국채의 원리금 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<u>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의 원리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</u> 제권판결문 정보(정보를 제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등본으로 한다)과 함께 국채원리금지급청구서<별지 제27호 서식>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등록기명국채의 경우 멸실 또는 분실 신고일 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</u> 제권판결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30조(증권의 무효기준) ① (생 략)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<u>분열된 세편을 접속한</u> 증권으로서 <u>동일 지편인 것으로</u> 감식하기 곤란한 것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통할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효증권을 소지인 입회하에 무효권의 표시를 한 후 소각자 및 입회자를 지정하여 태우기, 잘게 자르기 또는 녹이기 등의 방법으로 <u>처분</u>한다.</p>	<p>제30조(증권의 무효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잘게 나누어진 조각을 이어 붙인</u> 증권으로서 <u>동일한 지편(紙片)이라고</u> 감식하기 곤란한 것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통할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효증권을 소지인 입회하에 무효권의 표시를 한 후 소각자 및 입회자를 지정하여 태우기, 잘게 자르기 또는 녹이기 등의 방법으로 <u>소각</u>한다.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31조(소실, 위·변조증권의 보고) ① (생 략)</p> <p>② 본부는 위조 또는 <u>변조한 증권</u>의 발견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31조(소실, 위·변조증권의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본부는 위조 또는 <u>변조된 증권이 발견되었다는</u>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32조(증권의 묶음) ① (생 략)</p> <p>② 작은묶음은 각 장의 전후상하를 고르고 전면을 향하여 밀변 및 오른쪽변을 가지런히한 후 <u>소형띠지</u>로써 중앙을 세로로 묶는다.</p> <p>③ ~ ④ (생 략)</p>	<p>제32조(증권의 묶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작은묶음은 각 장의 전후상하를 고르고 전면을 향하여 밀변 및 오른쪽변을 가지런히 한 후 <u>소형띠지</u>로 중앙을 세로로 묶는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34조(과부족 보고 및 처리) ① (생 략)</p> <p>② 부족한 증권에 대하여는 <u>관련 담당자로 하여금</u> 해당 증권 또는 현금으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인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수입하고 본부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.</p> <p>③ 남는 증권에 대하여는 <u>보관증권 과목으로</u> 정리한다.</p>	<p>제34조(과부족 보고 및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부족한 증권은 <u>관련 담당자가</u> 해당 증권 또는 현금으로 변상하도록 하되 현금으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수입하고 본부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.</p> <p>③ 남는 증권은 <u>보관증권 과목으로</u> 정리한다.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35조(증권의 폐기 등) ① 상환 등으로 회수하거나 <u>용도말 소된</u> 국채증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폐기증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증권 앞면의 좌우양단 중앙에 『PAID』 또는 『무효』 구멍 뚫기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폐기된 증권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<u>3월간</u>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제권판결문의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받은 해당 증권의 만기일로부터 5년간</u> 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제2항에서</u>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국채증권은 감사실 검사역 입회하에 통할점장이 태우기, 잘게 자르기 또는 녹이기 등의 방법으로 수시 <u>처분</u>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35조(증권의 폐기 등) ① 상환 등으로 회수하거나 <u>용도가 없어진</u> 국채증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폐기증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증권 앞면의 좌우양단 중앙에 “PAID” 또는 “무효” 구멍뚫기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폐기된 증권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<u>3개월간</u>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제권판결문이 제출된 증권은 해당 증권의 만기일부터 5년간</u> 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제2항의</u> 보존기간이 경과한 국채증권은 감사실 검사역 입회하에 통할점장이 태우기, 잘게 자르기 또는 녹이기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<u>소각</u>할 수 있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36조(준용규정)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증권 of 보관 및 관리에 관한 <u>사항에</u> 대하여는 「발권규정 시행세칙」 및 「발권규정 시행절차」를 준용한다.</p>	<p>제36조(준용규정)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증권 of 보관 및 관리에 관한 <u>사항에는</u> 「발권규정 시행세칙」 및 「발권규정 시행절차」를 준용한다.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37조(인감신고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인감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대리인인감신고서<별지 제2호 서식>를 <u>제출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37조(인감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인감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대리인인감신고서<별지 제2호 서식>를 <u>함께 제출</u>하여야 한다.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38조(경쟁입찰) ① (생 략)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② 입찰은 감사실 검사역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8조(경쟁입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입찰은 감사실 검사역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전자입찰 및 모사전송 입찰의 경우에는 감사실 검사역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 및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추가</p>
<p>제41조(준용규정) 전자응찰의 취소, 입찰의 무효, 입찰결과의 <u>통보에 대하여는</u> 제16조, 제17조,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.</p>	<p>제41조(준용규정) 전자응찰의 취소, 입찰의 무효, 입찰결과의 <u>통보에는</u> 제16조, 제17조,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.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8장 <u>기타</u></p>	<p>제8장 <u>그 밖의 사항</u>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44조(수수료 징수) ① ~ ② (생 략)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참가기관과 비참가기관간 국공채거래에 대해서는 <u>수수료 징수를</u>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제44조(수수료 징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참가기관과 비참가기관 간 국공채거래에 대해서는 <u>수수료를 징수하지</u>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46조(전표) ① <u>국채사무 처리에 있어서는</u>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표를 사용한다. 다만, 한은금융망을 통한 거래시 전표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전산처리 결과 출력되는 자료를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 17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6조(전표) ① <u>국채사무를 처리할 때에는</u>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표를 사용한다. 다만, 한은금융망을 통한 거래시 전표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전산처리 결과 출력되는 자료를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u>< 신 설 ></u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 < 2019. 9.10 ></u> <u>이 절차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- 부칙 신설

현 행

개 정(안)

비 고

<별지 제1호 서식>

<별지 제1호 서식>

(앞면)		고객번호	
인감신고서			
한국은행 귀중			
거 래 종 류	효력개시일자		
(국채·금리스왑거래)	년 월 일		
귀행과의 위 거래에 사용할 (본인·기관대표자) 인감을 신고합니다.			
인 감			
비밀번호	※		
주 소			
기 관 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		
성 명			
년 월 일			
신 고 인 : (인)			
(기관대표자)			
인감대조	계 인	검 인	

(앞면)		고객번호	
인감신고서			
한국은행 귀중			
거 래 종 류	효력개시일자		
(국채·금리스왑거래)	년 월 일		
귀행과의 위 거래에 사용할 (본인·기관대표자) 인감을 신고합니다.			
인 감			
비밀번호	※		
주 소			
기 관 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(<u>생년월일</u>)			
성 명			
년 월 일			
신 고 인 : (인)			
(기관대표자)			
인감대조	계 인	검 인	

- “주민등록번호”를
“생년월일”로 변경

붙임서류 : 기관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

붙임서류 : 기관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

※ 표란은 개인의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(4자리 이상)로 기입하십시오.

※ 표란은 개인의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(4자리 이상)로 기입하십시오.

(규격 : 90mm×195mm)

(규격 : 90mm×195mm)